

편의시설에 대하여

On the Accommodation Facilities

류재경 / 비전건축사사무소(인천)
by Ruy Jae-Kyong

사람 귀한 줄 안다는 것과 행복

“사람 귀한 줄 아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당연한 것을 왜 물으십니까?” 라며 반문한다. 다시 말해서 질문의 정답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된 데는 더 말할 필요가 없고, 초등학생들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배워서 알고 있다. 인간의 가치는 그 사람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사람을 평가할 때는 실용주의 사고에서 평가되는 것을 확인하며 산다.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다. 그러나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개개인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내 주변에는 장애인과 그를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도 있지만 어린시절부터 장애라는 이유로 가족과 단절된 채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대다수 일 것이다. 어떤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힘드세요”라고 묻는 질문에 보호자인 어머니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괜찮아요”, “이 아이 때문에 사는 걸요” 였다.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희망한다. 행복의 조건을 표현하기는 어려우나 자기의 욕구가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 느끼는 감정, 또는 삶의 보람을 찾는 것이며 따라서 정신적 육체적 행복도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 즉 행복의 가치관을 자각하고 살면 그것이 행복이다. 나는 항상 행복의 조건을 묻는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하곤 한다. 자기 생활주변에서 아주 작은 일도 소중히 표출시켜, 행복이란 조건속에 받아 드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이다. 행복이란 물질적인 직접적 요구도 있으나 자신의 진실한 행위와 남을 위한 봉사를 통한 간접적인 행복도 포함되는 것이다.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이 행복한가, 생각해 본다. 행복이란, 가정과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행위로써 자신이 창조해야 하는 사랑의 실천이기도 하다.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 일시적으로 장애를 가진 이들의 사회활동 편의를 제공해 주고자 마련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8년 4월 11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우리사회의 편의시설의 설치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하여 전국 각 지역별로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자 「편의시설 설치 촉진단」이 결성되어 편의시설의 설치 실태조사, 홍보 및 계몽, 불합리한 시설물의 개선 권고 및 고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지에 의한 시설물의 불합리한 편의시설의 설치나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미설치된 건축물 등을 무조건적으로 고발 조치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이 법의 제정취지에 공감토록 유도하여 제대로 된 편의시설의 설치를 확산시키고자 간략 하게나마 설치기준 및 규격 등을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토대로 소개한다.

편의시설 설치

편의시설은 장애인 뿐 아니라 노인, 임산부, 아동, 환자, 짐을 든 사람, 유모차를 미는 사람 등 영구적

이든 일시적이든 공공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용자를 위한 시설이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은 읍·면·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의료보험조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이다.

편의시설설치 시민축진단(인천광역시 예)

- 사업주제 :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 축진단 구성 : 핵심요원 - 편의시설 연구개발, 의견제시 등 업무수행(장애인단체 간부, 사회복지업무 관련단체 간부, 관계 전문가 등 20인내 위촉)
: 일반요원 - 편의시설 실태조사, 부적정한 시설 신고, 홍보안내 등 업무수행(군·구별 3인 기준으로 장애인단체 직원, 건축사 등 30인내 위촉)
- 운영방법 : 요원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공간의 편의시설 실태를 체크리스트를 통한 공통점을 파악하며, 모임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하고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를 홍보 하는 등 자체실정에 따라 월 1회이상 별도의 효율적인 운영규정을 제정토록 한다.
- 실태조사지침 : 「편의증진법시행령」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및 적정설치 여부 조사하여 이 법이 시행된 이후 2년 이내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정비대상시설은 물론 그외 대상시설까지 미정비에 대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시민축진단의 건축사들

일반요원 3인씩을 선발하여야 하는 군·구의 복지와 담당자들은 편의시설에 관심을 가진 자중에 전문가로 건축사 1인을 추천하여 시장의 위촉장을 받게 하였다. 그후 제1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본인 뿐이었으며 이후 축진에 참여한 건축사는 더욱더 찾아볼 수 없다, 시간이 흘러 임기 1년을 보내고 2년차에 축진단 집행부가 바뀌면서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사들은 모두 해촉되고 말았다. 덕분에 많은 질서와 좋지 않은 눈길을 끝까지 봉사하려는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전문가 아닌 전문가의 집단으로 사회에 비쳐질까 큰 우려를 느낀다. 이러한 상황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대한건축사협회는 점점 더 사회에서 소외되는 단순한 이익 집단이 되어 간다는 것을 첨언하며 실태 파악과 더불어 사태수습 및 향후 대책을 촉구한다.

편의시설의 표준화

산업자원부는 최근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을 한국산업규격(KS)으로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형태·크기·재질 및 품질 등 통일된 기준이 없이 생산 설치되고 있다. 장애인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각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늦게나마 제정하였다고 한다. 이번 점자블록의 KS규격이 장애인만을 위한 표준화로서는 처음 제정되었고, 앞으로 점자 안내판 픽토그램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나온 점은 우리 건축사들의 역할론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를 느껴본다.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고시(안) 입법예고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공공기관과 공공이용시설에 최고 3천만원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나 화장실, 점자블록 등 공원 등의 건물주나 자치단체장 등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고시(안)」를 2001년 5월 16일 입법예고 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첫째로 2000㎡이상의 6층이상 건물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등 승강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1개층에 3백만원, 둘째로 화장실에 장애인용 변기를 남녀별로 각1개 이상 설치하지 않으면 1곳당 30만원, 장애인용 소변기나 세면대가 없으면 1곳당 2만원, 셋째로 건물에 장애인의 출입이 어려우면 ㎡당 5만원 등으로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미정비 공공시설 2만 5,047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6월말까지 최종조사를 한 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침이다.

신뢰받는 전문가 역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중 대부분이 사고나 재해 등 후천성 장애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보통 사람들에게겐 아무렇지도 않은 거리와 계단, 건물구조가 장애인과 노약자들에게 많은 위험과 불편은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들의 고통을 대신해 줄순 없지만, 장애인용 경사로 설치와 같은 간단한 개·보수 등 우리의 작은 배려가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모두 힘을 내어 문턱을 없애봅시다”